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규정

제정 1998. 9. 1.	규정 제342호	개정 2011. 4. 22.	규정 제1186호
개정 2000. 2. 14.	규정 제403호	개정 2011. 7. 4.	규정 제1190호
개정 2001. 4. 10.	규정 제488호	개정 2012. 6. 20.	규정 제1273호
개정 2001. 12. 28.	규정 제523호	개정 2012. 11. 30.	규정 제1319호
개정 2002. 10. 9.	규정 제556호	전부개정 2013. 11. 28.	규정 제1368호
개정 2003. 8. 1.	규정 제595호	개정 2014. 5. 29.	규정 제1445호
개정 2004. 6. 3.	규정 제663호	개정 2014. 10. 31.	규정 제1483호
개정 2004. 10. 6.	규정 제674호	개정 2016. 5. 17.	규정 제1606호
개정 2005. 12. 29.	규정 제748호	개정 2017. 10. 30.	규정 제1716호
개정 2006. 5. 4.	규정 제773호	개정 2019. 9.16.	규정 제1851호
개정 2006. 5. 11.	규정 제775호	개정 2019. 10.4.	규정 제1856호
개정 2007. 8. 3.	규정 제884호	개정 2020. 1.6.	규정 제1884호
개정 2008. 3.28.	규정 제949호	개정 2020. 3.18.	규정 제1909호
개정 2009. 3.2.	규정 제1014호	개정 2021. 3.24.	규정 제1998호
개정 2010. 8. 3.	규정 제111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28>

제2조(소재지) 연구원은 본교 안에 둔다<개정 2013. 11.28>

제2장 조 직

제3조(조직)

① 연구원에는 수도권연구소, 환경공학센터, 디자인연구센터, 국제도시혁신센터, 교통연구센터, 도시계획 및 부동산개발연구센터, 공간정보연구센터, 건축연구센터, 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 도시노인건강운동연구소, 융합도시연구센터, 환경계획연구센터, 도시사회연구센터, 수처리핵심기술개발센터, 국제도시및인프라연구센터, 스마트도시연구센터, 대도시무인이동체연구센터, 글로벌문화·공감사회연구센터, 도시의정발전연구센터, 대기오염연구센터, 혁신기술베타테스트 도시현장실증 연구센터(이하, 베타시티센터) 국제저널편집위원회, 기획부를 둔다. <신설 2005.12.29, 2011.7.4, 2012.6.20, 개정 2006.5.4, 2006.5.11, 2007.8.3, 2008.3.28, 2009.3.2, 2010.8.3, 2011.4.22, 2011.7.4, 2012.6.20, 2012.11.30, 2014.5.29, 2014.10.31, 2016.5.17., 2017.10.30.,2019.9.16.,2019.10.4., 2020.1.6., 2020.3.18>

- ② 수도권연구소는 수도권의 종합적 개발 및 다양한 도시생활환경의 조성에 관한 연구와 용역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2.6.20>
- ③ 삭제
- ④ 환경공학센터는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공학적 연구와 청정기술개발, 환경정보체계의 구축 및 환경오염물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연구와 관련용역사업을 수행한다.
- ⑤ 디자인연구센터는 시각디자인, 공업디자인, 공공디자인과 환경조형 관련 연구 및 관련용역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5.28, 2011.7.4>
- ⑥ 국제도시혁신센터는 서울메트로폴리탄 포라 등 국제학술교류사업, 국내외 저널발행, 도시혁신 사례집 발간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⑦ 교통연구센터는 도시교통시설물과 교통관리시스템의 계획, 설계,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연구 및 용역사업을 수행한다.
- ⑧ 도시계획 및 부동산개발연구센터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개발사업 기획 및 계획, 부동산개발 기획 및 계획, 사업성(타당성) 분석등에 관한 연구 및 용역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4.22>
- ⑨ 공간정보연구센터는 토지, 건물, 교통시설, 상·하수도 등 GIS를 포함한 공간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 및 용역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3.28>
- ⑩ <삭제 2006.5.11>
- ⑪ <삭제 2006.5.11>
- ⑫ <삭제 2006.5.4>
- ⑬ 건축연구센터는 각종 건축물의 계획 및 기본설계, 노후 건축물의 관리 및 평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연구, 서울시의 전통건축물 조사 연구를 수행한다.
- ⑭ 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는 각종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의 친환경적, 에너지전환기술 개발 및 기술 지원, 관련 소재 및 시스템화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개정 2007.8.3, 2008.3.28>
- ⑮ <삭제 2010.8.3>
- ⑯ 도시노인건강운동연구소는 도시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노인건강운동지도자 양성 및 재교육, 노인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신설 2009.3.2>
- ⑰ 융합도시연구센터는 다양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도시계획, 환경공학, 교통공학, 공간정보공학, 도시행정학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융복합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신설 2010.8.3>
- ⑱ 환경계획연구센터는 도시환경문제 해결과 도시민 선복지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환경생태계획, 녹색휴양계획, 도시경관계획, 도시공원녹지 디자인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신설 2011.4.22>
- ⑲ <삭제 2019.9.16>
- ⑳ 도시사회연구센터는 도시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문제를 조사·연구·분석하고 도시관련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신설 2011.7.4>
- ㉑ 수처리핵심기술개발센터는 수처리 핵심기술의 연구, 개발 활동 및 기술이전 활동을 수행한다.<신설 2012.11.30>

- ② 국제도시및인프라연구센터는 해외도시 및 인프라개발정책의 현황 및 다양한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와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학술활동과 이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인적교류 및 교육활동 등을 수행한다.<신설 2014.5.29>
- ③ 스마트도시연구센터는 국내 및 세계의 스마트도시 현황조사, 연구 및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학술활동, 국내외 인적교류 및 교육활동 그리고 관련사업등을 수행한다. <신설 2016.5.17>
- ④ 대도시무인이동체연구센터는 대도시에서 무인이동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개발과 법/제도 개선에 대한 조사·연구와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학술활동과 이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인적교류 및 교육활동 등을 수행한다. <신설 2016.5.17>
- ⑤ 글로벌문화·공감사회연구센터는 글로벌문화의 제 현상을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공감사회의 실현을 위한 연구와 연구 성과물의 국내외적 공유와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2017.10.30.>
- ⑥ 도시의정발전연구센터는 의정발전을 위한 역량개발 및 강화프로그램 운영, 의정활동 강화방안 연구, 장래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 양성 및 자치의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용역사업을 수행한다.<신설 2019.10.4.>
- ⑦ 대기오염연구센터는 각종 대기오염 현상 및 모니터링 빅데이터 분석, 대기오염 배출원 규명, 대기오염 저감기술 연구, 법·조례 개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전문교육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20.1.6>
- ⑧ 베타시티센터는 도시 혁신 기술 연구와 이론 교육이 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관산학 협의의 주체적 매개자로서 선도적 연구,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2020.3.18>
- ⑨ 국제저널 편집위원회는 도시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탐구라는 본 학술지 발간 목적에 적합하도록 편집 및 발간등 제반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12.6.20, 개정2014.5.29, 2016.5.17., 2017.10.30., 2019.10.4., 2020.1.6., 2020.3.18>
- ⑩ 기획부는 대내적으로는 연구과제 개발, 배분 및 평가, 홍보·출판, 교육 등 연구원의 제반업무를 총괄 조정하며 대외적으로는 창구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09.3.2, 2010.8.3, 2011.4.22, 2011.7.4, 2012.6.20, 2012.11.30, 2014.5.29, 2016.5.17., 2017.10.30.,2019.10.4., 2020.1.6., 2020.3.18>

제4조(원장등 임원)

- ① 원장은 관련 분야의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2.6.20.>,<개정 2014.10.31>
- ② 소장, 센터장, 기획부장(이하 “부서장” 이라 한다)은 관련분야의 교내교수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신설 2012.6.20, 개정 2013.11.28>
- ③ 국제저널편집위원장은 관련분야의 교내교수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12.6.20, 개정 2013. 11.28>

제5조(임무)

- ① 원장은 연구원의 제반 업무를 책임지며 연구원을 대표한다.
- ② 소장, 센터장은 각각의 연구 부서를 운영세칙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③ 기획부장은 원장을 도와 연구원의 제반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제6조(연구원 및 직원)

- ① 연구원에는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특별연구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위원은 박사학위소지자 및 그에 준 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연구원의 각 부서장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은 박사석사학위소지자 및 그에 준 하는 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연구원의 각 부서장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④ 유능한 도시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해 도시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 후속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의 각 부서장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⑤ 각 부서에는 부서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는 직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연구원 또는 직원의 경우 원장 또는 센터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⑥ 연구원 고용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구책임자와 그 배우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특수 관계자 연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4.>

제7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1.3.24.>

③ 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연구처장, 도시과학대학장 그리고 연구원의 각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본 대학 전임교수나 외부관련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 10. 6>

④ 위원장은 회무를 관리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기획부장이 간사의 일을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연구원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발전전략,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3. 연구요원의 임명 추천
4.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운영위원회에게는 약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연구자문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연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제3장 사 업

제9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 11.28>

1. 도시문제와 도시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2.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3. 각종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사업(개정 2012.11.30)
4. 도시과학 및 서울시정에 관련된 정보의 관리 및 각종 출판사업
5. 시공무원의 단기교육 및 연수사업
6. 도시과학 관련 학술행사의 개최 및 학술지의 발간
7. 도시과학대학(원) 및 관련 대학(원)과의 학·연협동사업의 실시
8. 유능한 도시과학인 양성을 위한 ‘학위 후 수련과정(Post-Doc.)’ 운용
9. 국내외 관련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와 교류사업의 추진
10. <삭제 2006.5.11>
11. <삭제 2006.5.11>
12. GIS관련 연구사업
13. 친환경에너지 기술개발, 국내외 유기성 폐자원의 전환 기술개발, 관련 요소기술 및 소재기술 개발, 시험검사 및 연구개발 인프라구축을 연구하는 사업 <신설 2005.12.29, 개정 2007.8.3>
14. <삭제 2010.8.3>
15. 노인건강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노인건강운동지도자 양성 및 재교육,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신설 2009.3.2>
16. 도시환경생태, 도시경관, 녹색관광 및 휴양등 도시문제 해결 및 도시민 복지 발전에 관한 연구 및 학술행사 등 연구사업 <신설 2011.4.22>
17. <삭제 2019.9.16>
18. 도시사회와 문화의 조사·연구·분석 및 도시정책연구<신설 2011.7.4>
19. BT-NT-IT 융합기반 수처리기술 분야에 관한 연구, 개발 활동 및 기술이전 <신설 2012.11.30>
20. 해외도시 및 인프라개발 관련 정책연구사업 및 학술활동 <신설 2014.5.29>
21. 스마트도시 관련 학술 및 사업 활동 <신설 2016.5.17>
22. 무인이동체 관련 학술 및 사업 활동 <신설 2016.5.17>
23. 글로벌문화와 공감사회연구관련 학술 및 사업 활동 <2017.10.30.>
24. 자치 의정발전 관련 정책연구, 지방의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신설 2019.10.4>
25. 대기오염 현상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및 빅데이터 구축 및 해석, 도시형 초미세먼지 발생원 시설에 대한 종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기오염개선 관련 법제도 분석, 대기오염 저감기술 등을 위한 기초연구 및 사업활동 <신설 2020.1.6.>
26. 혁신기술 베타테스트 도시현장실증 연구를 위한 기획, 운영, 개발 및 사업활동 <신설 2020.3.18.>
27.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수행을 통한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 <신설 2021.3.24.>
28. 기타 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2005.12.29, 2006.5.11, 2009.3.2, 2011.4.22, 2011.7.4, 2012.11.30, 2014.5.29, 2016.5.17., 2017.10.30., 2019.10.4., 2020.1.6., 2020.3.18>

제4장 재 정

제10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신설 2013. 11.28>

제11조(재원) 연구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3. 11.28>

1. 본교 일반회계 및 기성회계의 예산<개정 2013. 11.28>

2. 서울특별시 및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위탁연구비
3. 국내외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4. 연구원의 기금

제12조(예산·결산) 매년 예·결산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예·결산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1.28>

제13조(연구기금)

- ① 연구원은 연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연구기금을 조성 할 수 있다.
- ② 연구원은 외부위탁연구의 계약금액 중의 일부를 개발보전비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의 효율과 사용 방법에 관해서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기 타

제14조(임명교수에 대한 지원) 원장은 연구원에 부서장 및 연구위원으로 임명되는 교내교수가 연구원의 발전회의에 참석할 경우 소정의 회의수당 지급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11.28>

제15조(특별 및 초빙연구원에 대한 지원) 원장은 제6조제4항의 특별연구원과 특정과제를 위해 초빙되는 한시적인 연구원에게 연구공간과 연구지원비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3. 11.28>

제16조(운영세칙)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부 칙 <규정 제342호,1998.9.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03호,2000.2.14.>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88호,2001.4.10.>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23호,2001.12.28.>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56호,2002.10.9.>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95호,2003.8.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63호,2004.6.3.>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74호,2004.10.6.>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48호,2005.12.29.>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73호,2006.5.4.>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75호,2006.5.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84호,2007.8.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949호,2008.3.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014호,2009.3.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10호,2010.8.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86호,2011.4.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90호,2011.7.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73호,2012.6.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19호,2012.11.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68호, 2013.11.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45호, 2014.5.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83호, 2014.10.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606호, 2016.5.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716호, 2017.10.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851호, 2019. 9.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856호, 2019. 10.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884호, 2020. 1.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909호, 2020. 3.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998호, 2021. 3.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